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석유가스 중 부탄 및 휘발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인하폭을 축소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현행	개정안
<p>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p> <p>가. (생략)</p> <p>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p> <p>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 다. (생략)</p> <p>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p> <p>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p> <p>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p> <p>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p> <p>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p> <p>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의2(탄력세율) ①-----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2024년 8월 31일</u>-----<u>193원</u> -----.</p> <p>4.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2024년 12월 31일</u> -----</p> <p>5. ----- -----</p> <p>가. ----- ----- ----- ----- -----<u>2024년 12월 31일</u>----- -----.</p> <p>나. ----- -----<u>2024년 12월 31일</u>-----</p> <p>다. ----- -----<u>2024년 12월 31일</u>-----</p> <p>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①-----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u>2024년 6월 30일까지</u> 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1. ----- ----- <u>2024년 8월 31일</u> ----- -- <u>423원</u> -----.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u>2024년 6월 30일까지</u> 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2. ----- ----- <u>2024년 8월 31일</u> ----- -- <u>263원</u> -----.

III. 시행일 등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시행일

-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시행일

-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붙임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전혜리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